

민주시민교육 강사 전문성 강화과정

자 료 집

□일시 : 2021년 4월 8일(목) ~ , 오후 2시~5시

□장소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교육실

□주관 :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강좌안내

민주시민교육 강사 전문성 강화 과정

- 일시** 2021년 4월 8일~5월 13일 오후 2시~ 5시, 총 7회
- 장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3층 교육실(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교육)
- 대상**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있는 시민 선착순 20명내외
- 신청**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홈페이지(<https://idph.kr>) 신청서 다운받아
메일(idph@daum.net)이나 팩스(032-862-5352) 접수
- 접수** 2021년 3월 22일~4월 5일(월) 6시까지
- 문의** 032-862-5353 (담당자 정윤미)



- | | | |
|---------|-------------------|----------------------|
| 4/8(목) | 다시, 민주시민교육-철학 | 김만권(정치철학자/경희대학교 교수) |
| 4/15(목) | 헌법 속 민주시민, 교육 |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 4/22(목) | 공동체안의 민주시민 | 이정미(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공동대표) |
| 4/29(목) | 보이텔스바흐합의와 민주시민교육 |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 5/12(수) |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기획 1,2 | 권복희(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결 대표) |
| 5/13(목) | 워크샵 | |

차 례

- ◆ **지구화시대의 참여** 5
김만권 (정치철학자/ 경희대학교 교수)

- ◆ **헌법 속 민주시민, 교육** 55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 **마을공동체의 밑거름으로 피어나는 민주시민 꽃** 69
이정미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공동대표)

- ◆ **보이텔스바흐합의와 민주시민교육** 77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기획** 91
권복희 (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결 대표)

지구화시대의 참여

김만권 (정치철학자/ 경희대학교 교수)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민주주의와 참여

- 인간이 정치적 동물이라면 정치참여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야말로 정의와 부정의를 구별하는 일이며 인간을 공동체로 성립시키는 근원이라고 봄
- 이렇게 본다면 정치참여야말로 정의로운 인간이 되는 제일 좋은 방법

정치참여가 좋은 삶을 만든다

- 구성원들이 정치적 장에 모여 무엇이 정의이고 정의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을 펼치는 가운데,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좋은 삶"의 내용을 형성하는 동시에 그 내용을 몸소 익히게 됨.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대의 민주주의에서 참여의 의미

- 대의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여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떤 정치인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들의 요구를 먼저 들어주지는 않음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나를 보이는 존재로 만드는 참여

- 결국 대의민주주의에서 참여는 대표자에게, 사회구성원들에게 내가 보이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 내 목소리를 듣게 하여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제일 효과적인 수단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보호와 존중

- 정치사회에서 존중은 언제나 보호와 연결되어 있음
- 존중 받는 존재일수록 국가의 보호, 정치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 됨
- 우리는 이 보호를 통해 보이는 존재가 되지만, 문제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국가가 먼저 보호하려 들지는 않는다는 것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보호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

- 만약 우리가 보호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보호를 요구한다면?
- 이런 보호의 가치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면?
- 만약 이런 일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대응해야만 할까?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지구화 시대의 민주주의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내 옆의 이웃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되어간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모두가 가난한 시대,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시대의 빈곤과
부가 넘쳐나는 시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된 시대의
빈곤은 전혀 다른 것이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밥 민주주의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밥 민주주의'

- 문 대통령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은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자산격차

- 김낙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국세청의 상속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4년간 한국 20살 이상 성인 기준 자산 **상위 5%가 한국 전체 자산의 절반 이상인 50.3%**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하위 50%의 자산은 1.7%** 가량을 가지고 있음."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소득격차

- (2019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의 '**2017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0.1%에 속하는 2만2천여명이 하위 27% 구간인 629만5천명만큼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양극화를 해소하라

- 문 대통령은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이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며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일자리 만들기가 가능할까?

- 그렇다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런 일자리 만들기가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 정부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
- 지구화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지구화 속의 노동과 잉여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지구화란?

- 놀라운 기술의 혁신에 기반하여 기존의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빠른 속도로, 그리고 대규모로 행해지고 심화되고 있는 상호의존성의 과정
- 시간과 공간의 압축이며 사람들이 이를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과정
- Globality(지구성)이라는 과정으로의 이행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창조적 파괴

- “모든 창조가 창조적 파괴의 문제라는 건, 이를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곤 모든 이들에게 명백한 사실이다. 모든 창조는 오염을 일으키며 가끔은 유독한 찌꺼기를 남긴다. 그것은 합리화된 대상에서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잉여) 부분을 갈라서 후자를 폐기하는 ‘합리화’ 과정의 폐기물이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구조조정

- “리차드 세넷은 최근 경영전략의 최고 지침 가운데 하나가 ‘체제의 단절적 재창조’, 다시 말해 그 파괴적인 실체를 ‘구조조정’이라는 그럴 듯한 이름으로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구조조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인원감축’**이라고 세넷은 말한다. 그는 마이클 해머와 제임스 챔피를 인용해, 구조조정이 **‘더 적은 수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걸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대량 잉여

- "'인원감축'의 인간적인 면은 그저 더 많은 정리하고 이다. 인적 측면에서 보자면, 정리되고된 이들은 '구조조정'의 주요 '쓰레기'를 이룬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주주들에게 투자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이 때문에 기업들은 침략하고 정복할 수 있음을, '창조적으로 파괴'할 수 있음을 과시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합병이다. 합병 뒤에 따르는 것은 '자산박탈' '인원감축' '아웃소싱' 그리고 대량잉여이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지구화

- "'지구화가 ... 오늘날 가장 많이 생산하고 통제는 거의 받지 않는, 인간 쓰레기 또는 쓰레기가 되는 인간들의 '생산라인'이다. 지구화는 오래된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키며 그것에 새로운 의미와 전례없는 절박함을 불어넣는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잉여에 대한 배출구가 없는

- 근대적 삶의 양식이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생물학적 의미에서 그리고 사회, 문화적 의미에서 기존의 적당한 생존수단을 박탈당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꾸준히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예의 식민주의와 비슷하지만 압력이 가해지는 방향은 식민주의와 반대다. **이 인구 증가의 압박에 대해 마련되어 있는 배출구는 없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일시적 무능력자와 쓰레기의 경계없음

- ‘잉여’ 인구 전체가 배출되지 않은 채 ‘쓸모 있고’ ‘적법한’ 사람들과 함께 밀집상태로 남아 있을 때, 일시적인 무능력자와 절대적인 쓰레기 범주에 해당하는 이들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흐릿해지고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어진다.
- ‘쓰레기’가 된다는 건 예전처럼 사람들 가운데에 격리된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가능한 전망**이 된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지구화 시대, 달라진 세계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소비사회

- '소비자는 왕이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극단적인 소비사회의 시대로 진입**해 들어왔음
- 소비자의 미덕은 생산이 아닌 **무엇인가를 소모하는 것(consume)**.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기술사회

- 더불어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간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
- 제레미 리프킨, <노동의 종말>(1996): 기술의 진보로 인해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사회가 올 것
- 반면, 인구감소로 인해 노동력 부족사태가 올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음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양극화 사회

- 사회 전반적으로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극단화되고 있는 현실
- **1대 99 사회.**
- 양극화 사회에서 소비의 능력을 일부만 갖추게 되는 것은 필연적 귀결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소비사회에서 엄격한 노동윤리

- 우리는 늘 노동하는 자들을 우대하고, 노동 그 자체를 신성시 해 왔음
- 이런 우리의 발상은 "국가에서 받는 어떤 혜택이라도 노동하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정당화해 왔음
- 바우만은 소비사회에서 엄격한 노동윤리란 어려운 처지에 놓은 자들을 배제하는 논리라 주장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소비와 노동

- 노동하는 자가 소비할 능력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듯 보이지만
- 소비할 능력을 가진 자들이 노동하는 자들 인지에 대해선 질문하지 않는 사회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자본과 소비

- 양극화를 만드는 주범 중 하나는 노동이 만드는 이익률보다 자본이 만드는 이익률
- 소비 능력을 갖춘 이들이 정말 소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는 것일까?
- 더 나아가 소비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일까?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어떻게 양극화되고 있는가?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놀라운 임금 차이

-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은 총 243억8,100만원을 받아 그룹 총수들까지 죄다 제치고 ‘연봉왕’에 등극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억3,175만원, 하루에 6,680만원이다.” (2018년 4월 2일 한국일보)
- 현실에서 주 52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들은 시간 당 만원을 두고 싸우고 있음.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2014년-2018년 상장기업 등기임원 보수분석

- “지난 5년간 상장 기업 등기 임원 중 보수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이다. 5년간 연봉과 성과급으로 624억5500만원을 받았다. 연평균 124억9100만원이다. 다음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으로 같은 기간 582억4400만원을 받았다. 3위는 이웅열 코오롱 회장(534억원·이하 만 단위 생략), 4위는 고(故) 구본무 LG 회장(504억원), 5위는 고(故) 조양호 한진 회장(365억원)이었다” (위클리비즈, 2019.12.06)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놀라운 임금차이(상위5%)

- “한국에서 연봉 1억원을 넘게 받는 직장인은 77만340명으로 집계됐다. 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연봉이다. 본지가 20일 건강보험공단에 작년 12월 신고된 회사원·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장인 1580만5413명의 소득(세금 공제 전 액수) 데이터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기업체의 경영주·회사원은 물론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공무원·교사들이 모두 포함됐다.” (2017년 2월 21일 조선일보)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놀라운 임금차이

-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연봉은 3172만원(세전 기준), 중간 연봉은 2225만원이다. 평균 연봉은 전체 근로자의 연봉을 모두 더한 값을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 중간 연봉은 모든 근로자를 연봉 순서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근로자의 연봉을 의미한다.” (2017년 1월 20일 조선일보)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놀라운 임금차이

- “11일 통계청의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28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156만5000원**보다 127만8000원 높은 금액이다.” (2017년 11월 11일 조선일보)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평균연봉

- “2018년 임금근로자 연봉분석에서 전체 근로자 1544만명의 평균연봉이 363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평균연봉 3475만원에 비해 4.6% 늘어난 것이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놀라운 임금차이 (평균 및 중간연봉)

- “2018년 연봉분위별 평균연봉은 10분위 9,931만원, 9분위 5,893만원, 8분위 4,528만원, 7분위 3,701만원, 6분위 3,105만원, 5분위 2,639만원, 4분위 2,290만원, 3분위 1,988만원, 2분위 1,562만원, 1분위 689만원이었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대기업의 높은 임금

- “삼성전자는 지난해 임원을 제외한 직원 평균 연봉도 2016년보다 1,000만원 늘어난 1억1,700만원으로 최상위권이다. SK텔레콤 직원 평균 연봉은 1억600만원, 현대자동차는 9,2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2일 한국일보)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대기업이 만드는 일자리 수

- “우리나라에서 법률상 ‘대기업’(종사자 300인 이상)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83만 명이 조금 넘는다. 삼성, 현대, 에스케이, 엘지, 롯데 등 이름이 알려진 재벌 계열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이보다 훨씬 적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의 87.7%(지난해 기준)에 이르는 1306만명은 300인 미만을 고용한 ‘중소기업’에서 일한다.”(2014년 7월 21일)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압도적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 “국내 중소기업의 수는 354만 개. 전체 노동자 10명 중 9명이 중소기업을 일터로 삼고 있다...임금근로자 87.9%를 고용하고 있는 354만 개의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다. 354만 개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기업은 10만 2,000개(2.9%)에 불과하다.”(2017년 5월 4일 참여와 혁신)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압도적인 중소기업의 일자리

- “종사자 수로 보면 대기업이 193만 5,000명(12.1%)을 고용하고 있다. 중기업은 400만 6,000명(25.1%)을,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은 397만 5,000명(24.9%)을 고용하고 있다.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사업체에는 604만 6,000명(37.9%)이 일한다. 중소기업 전체로 보면 종사자 수는 1402만 7,000명, 비율로는 87.9%에 이른다.” (2017년 5월 4일 참여와 혁신)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놀라운 노동시간

- “16일 OECD의 '2017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2016년 기준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천69시간으로 OECD 회원 35개국 평균(1천764시간)보다 305시간 많았다.
- 이를 하루 법정 노동시간 8시간으로 나누면 한국 취업자는 OECD 평균보다 38일 더 일한 셈이 된다.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OECD 평균보다 1.7개월 가까이 더 일한 꼴이다.” (2017년 8월 16일)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소비능력과 노동?

- 정말 소비능력은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노동하고 있는가에 비례하는 것일까?
-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거짓말!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한번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면?

- “실업 급여를 받은 10명 중 3명만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해 생활안정과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대전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한 인원은 2만 9497명이지만, 재취업한 사람은 8960명(30.3%)이었다.”(2017년 11월 16일 노컷뉴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노동이 어려운 시대의 사람들

- 노동하고 싶어도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 우리가 노동을 분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인가?
- 정말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을까?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폭발적인 인구감소인가? 그게 대책인가?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노동 밖의 사람들

-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노동시장 안의 사람들이라면,
- 정작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노동시장 밖의 사람들의 삶은,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 논리적으로 누구를 보호해야만 하는가?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침묵하는 새로운 빈곤층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오늘날의 착한 빈민

- 옛날에 착한 인디언은 죽은 인디언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착한 인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빈민이다.
- 그는 스스로를 돌보며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침묵하는 빈민

- 빈민들은 그들의 불행을 신경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불행을 고민한다고 해도, 그들이 분노한다거나 그 분노를 바탕으로 행동할 결심을 했다는 실제적 증거는 거의 없다. 모든 시대의 빈곤층이 고통을 겪었듯이 그들도 지금 분명히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빈민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달리 자신들의 고통을 공적인 관심의 문제로 만들지 못하거나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홀로 남은 빈민

- 구조조정이나 자기재발명의 산발적인 시도들로부터 생겨난 '인간쓰레기'는 사회적 불모지 속으로 축출되어 누구의 관리도,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는다.
- 그 새로운 '황무지'에서, 배제된 잉여인간들은 법과, 수없이 교차하는 윤리적 의무가 미치지 않는 곳에 버려진다. 그들은 불행의 꼭대기에 아무런 도움 없이 홀로 남는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왜 배제된 이들은 저항 않는가1

- **비정규직화와 같은 문제는**, 그 [빈곤] 문제를 겪는 이에게 심각하게 영향을 끼친다.
- **미래전체를 불확실하게 만듦으로써 모든 합리적 예측을 가로막고**, 특히 현재의 조건, 더 나아가 가장 견디기 힘든 조건에 집단적으로 맞서려고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신념과 희망을 가로막는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왜 배제된 이들은 저항 않는가2

- 이것이 바로 오늘날 '배제된 이들'이 요구 조건이나 계획을 갖고 나서지 않고, 자신들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유**다.
-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그들 자신의 눈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왜 배제된 이들은 저항 않는가3

- 그들은 사회가 어떻게 돕는지 알지 못하고, 도움을 받으리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축구 도박이나 복권당첨 이외 어떤 것이 자신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는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잉여들은 어디에 있는가?

- 불필요하고 쓸모가 없고 버려진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가장 간단한 대답은 이것이다. 눈밖에 있다.
- 먼저 그들은 새로운 소비자 사회의 내부인인 우리가 다니는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에 따라 그들은 모든 의무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된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도덕적 세계로부터의 분리

- 빈민들을 거리에서 없애는 한편, 윤리적 의무의 세계에서도 쫓아낸다. 그 방법은 궁핍의 언어로 씌어졌던 이야기를 타락의 언어로 다시 쓰는 것이다.
- 평상시 질서에 문제가 감지되어 대중적 항의가 일어날 때마다 그에 맞춰 검거되는 '유력한 용의자들'은 빈곤층에서 제공된다.
- 빈곤층은 방종하고 죄를 짓고 도덕적 기준이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가난은 범죄다

- 따라서 빈곤은 사회정책의 주제에서 형법의 문제로 변한다. 빈곤층은 사회의 명백한 적이다... 복지수급에 기대어 사는 이들은 범죄조직의 자연스런 온상이고, 사람들을 복지수급에 묶어둔다는 건 예비범죄자를 기른다는 뜻이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

- 가난과 범죄행위를 연관시키는 것은 또 다른 효과가 있다. 그것은 빈곤층과 도덕적 책임감을 분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빈곤의 범죄화는 그 욕구를 없애버리거나 논리가 성립하지 못하게 한다... 빈곤층의 의존을 죄악으로 지목하면서, 오늘날 노동윤리는 부유층의 도덕적 가책을 크게 덜어준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가난한 사람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외로움 속에서

-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밑바닥 계급”인데, “**밑바닥 계급**”은 **공동체가 아니라 범주이다**. 이 범주에 속한 이들이 공유한 유일한 특징은, **그들이 세상에서 배제된 채 따로 존재한다**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고 인정되는 조건과 표식을 모두 빼앗긴다는 뜻이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가난해지면 외로워진다

- **빈곤한 이들은 공동체에 호소하지 않는다**. 보체크가 말할 수 있는 공동체란 애초에 없었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패와 고통에 대해 개별적으로 쏟아지는 비난을 곳곳하게 감수함으로써 혼자서 고통을 견뎌낸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가난한 이들의 삶은 황무지...

- 밑바닥 계급은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금지된 지역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소름끼치는 황무지와 같다... **일단 들어서면 되돌릴 수 없다.** 일단 들어서는 순간 엄청난 혐오의 시선을 받는다. 밑바닥 계급은 불행의 징조이기 때문이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통제할 수 없기에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이들

- “이해한다”는 말의 의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무능함과 무력함을 느끼며 불행해 한다.
- 가난한 이들의 삶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이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며, **밑바닥 계급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아무 때나 굴욕스런 존재들

- 불행하다는 것은 아무 때나 굴욕감을 느낀다는 뜻이지만, '운명'이 개인적으로 덮칠 때는 더 크게 느껴진다..."분명히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통찰력 있고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란 생각에 휩싸여 살게 된다.
- 이들은 남은 조금이라도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 뒤에 자신을 숨긴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굴욕에서 비하와 혐오로

- 굴욕으로 생긴 수치심은 자기비하와 자기혐오를 불러온다. 이런 감정은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깨닫는 순간 우리를 압도해 버린다.
- 자기혐오는 계속되면 절대 견뎌낼 수 없는 끔찍한 감정으로, 분출할 배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배출구를 찾아야 한다. 그 배출구는 우리의 내적 자아에서 멀리 떨어진 대상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망가지기 때문이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분풀이 대상

- **굴욕감을 느끼는 우리들은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어버릴 대상이 필요하다.** 비록 대상이 누구인지 그 방향조차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는 받았던 고통을 반드시 설욕해야 한다. **하지만 분풀이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된다.** 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데, 그들은 누군가의 몰락과 굴욕, 고통에 가장 큰 책임을 진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혐오의 악순환: 미움받게 되는 이들

- **이로 인해 이들은 미움받게 되는데,**
- **사람들은 이 세상이 증오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라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한다고 주장하게 된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이들을 어떻게 궁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 이렇게 보면 궁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된다.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들을 궁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외로운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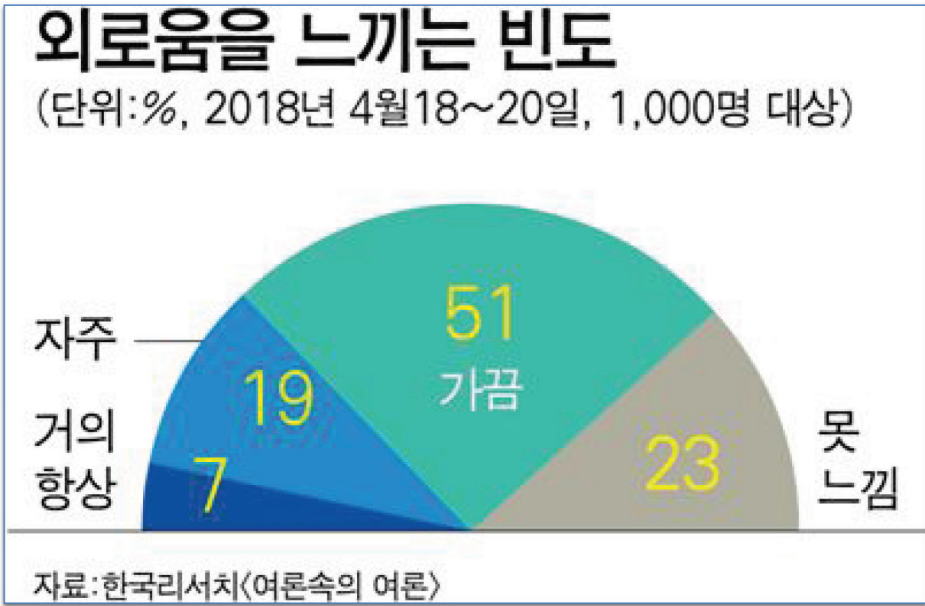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4명 중 1명이 항상 외롭다

- 한국리서치에서 2018년 4월 실시한 만 19세 이상 전국 1,000명 웹조사 결과를 보면,
- 응답자의 7%가 지난 한달 간 '거의 항상' 외로움을 느꼈다고 답했고, 19%는 '자주' 느끼고 있다고 답해, **4명 중 1명은 상시적인 외로움에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음.
- 나머지 51%도 '가끔'이지만 외로움을 느꼈다고 답했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대한민국, 젊을수록 외롭다

- 외로움 체감도에 있어 성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세대별로는 **젊은 세대일수록 외로움을 체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소득이 낮을수록 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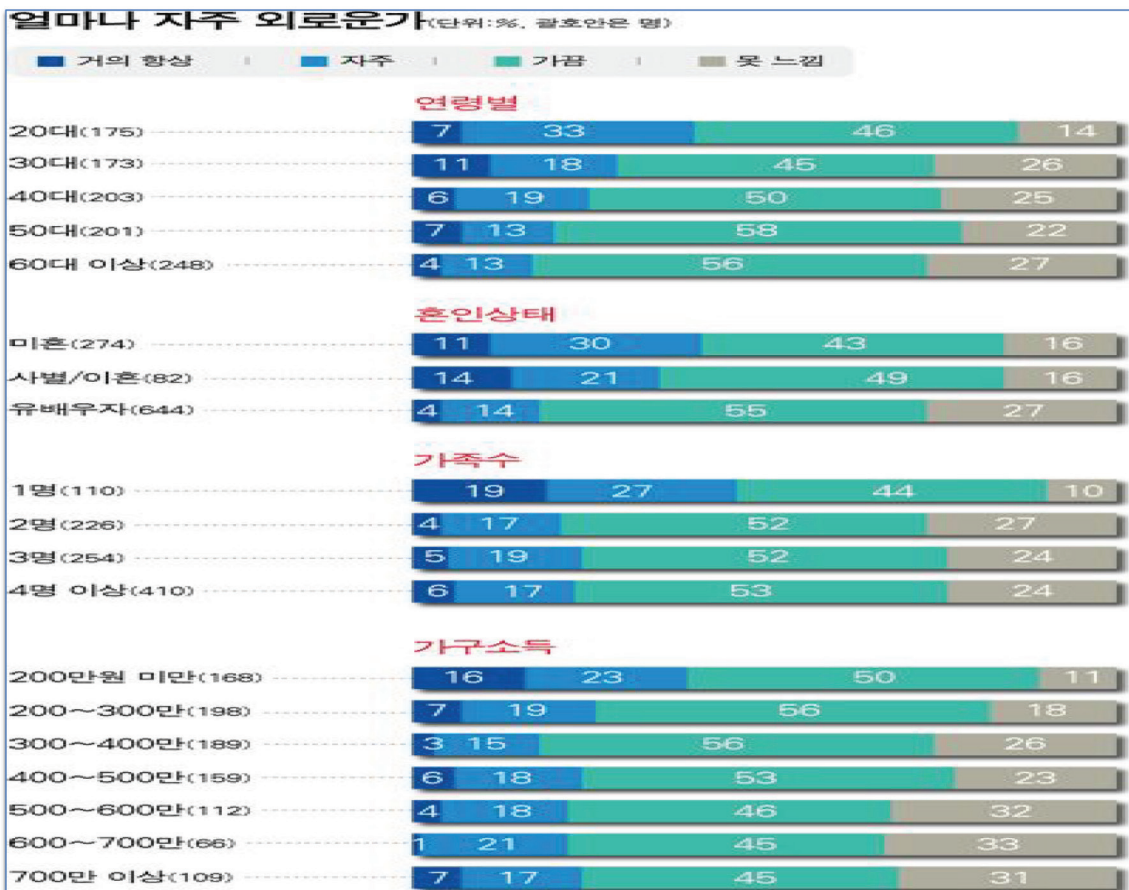
- 2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 단지 11%만이 외로움을 못 느낀다고 답변한 반면, **39%가 자주 혹은 항상 외로움을 느낀다고 답변**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홀로 살수록 외롭다

- 1인 가구 구성원이 외로움을 빈번하게 느끼는 비율이 45%(항상 19%+자주 27%)나 되지만, 2인 가구 이상에서는 21~24% 수준에 그쳤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대한민국 청년들의 문제

-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1인 가구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낮음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청년빈곤이 중년빈곤으로

- 일을 하거나 구직중인 청년 3명중 1명꼴로 근로빈곤 혹은 불안정 고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하더라도 빈곤하거나 빈곤 위험에 빠지기 쉽다는 의미다. 또 20대 때 빈곤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 30~40대가 되어서도 다시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다. 청년층에 대한 적극적 소득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한겨레 2017년 3월 3일)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청년빈곤은 생애빈곤이 된다

- “2005년에 19~34살이었던 청년들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빈곤에서 벗어나는지를 추적 조사한 결과, 2006년(20~35살) 6.7%였던 상대소득 빈곤율(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은 이들이 29~44살이 된 2015년에도 6.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청년빈곤이 생애 빈곤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도움을 청할 곳 없는 대한민국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 OECD 2017 삶의 질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곤란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가?'라는 항목(사회적 연계지표)에서 75.9%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 알고 보면 이 순위는 **OECD 41개 국가 중 꼴지였으며, 40위인 멕시코가 80.1%였음.**
- **알고 보면 2015년부터 꾸준히 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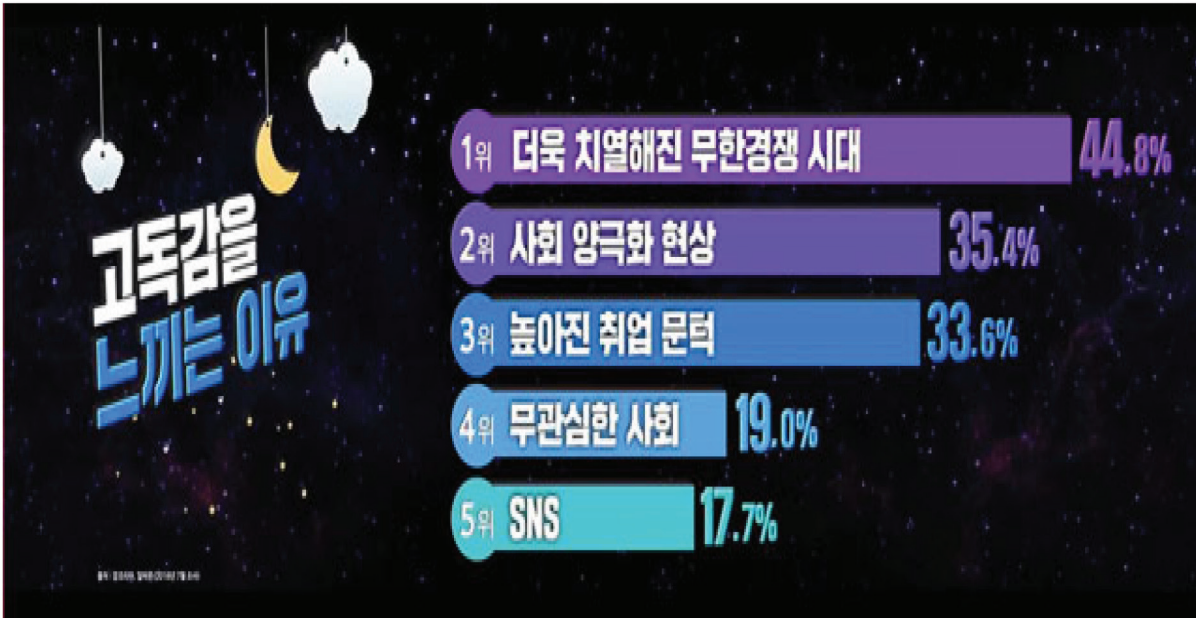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젊은이들이 본,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유는?

- 힘들거나 곤란할 때 손을 내밀 누군가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위는 무한경쟁 시대가 꼽혔음.
- 이 외에도 **사회 양극화, 무관심** 등의 답변이 순위에 들었음
- **내가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을 이겨야만 하는 상황, 타인과의 공감이나 소통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뒷전으로 밀려났고, 그 자리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음.**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참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범죄적 민주주의

- 무절제한 이기주의에 기반한 이들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현실을 지적하는 말로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범죄적 민주주의

- 특히 많은 정치엘리트들이 이런 무절제한 이기적 개인들이 이런 집단이 사회를 통제할 수 없는 혼란으로 몰아간다고 비판하는데,
- **민주주의가 이를 용납함으로써 사회가 개인들의 무절제한 이기심을 실현하는 장으로 전락해버린다고 믿고 결국엔 민주주의를 혐오하게 된다는 것**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포스트 민주주의

- 그러나 정작 콜린 크라우치는 포스트 민주주의를 통해 무절제한 개인들을 비판하는 정치엘리트들이 경제엘리트들과 결탁하여 봉건적 민주주의가 탄생하고 있다고 비판
- 이 결탁을 통해 모든 이익을 민주적 과정을 통해 획득하여 자신들이 차지하는 모든 이익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
- 오히려 범죄적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세력은 엘리트들이라는 것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정의는 평등한 자들간에만 성립한다

- 그러나 지금껏 우리가 말해온 방식의 정의는 오로지 평등한 자들 간에만 성립한다는 고대 아테네인들의 지혜는 새겨들을 만한 함.
- 불평등한 자의 본질적 관계는 지배와 복종이기에 이런 관계에서 공공사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정의를 도출하는 일은 불가능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왜 민주주의인가?

- 시민으로서 정치적 정의는 반드시 최소한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할 때만 성립.
-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참여의 자유를 부여하는 유일한 체제
- 아무리 혐오해도 민주주의야말로 정의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우호적인 기반
- 우리가 민주주의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왜 참여일까?

- 민주주의가 대의제를 통해 실행되는 한, 참여하지 않는 자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는 일은 없다는 간단하고도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참여로 무엇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삶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두 번째 목적
- 그렇다면 참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까?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연대와 소속감의 발견

- 참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지가 같은 사람들,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발견하고 이 속에서 연대를 형성하며 나아가 속할 곳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개인이 참여의 밖에 존재할 때

- 개인이 참여의 밖에 존재할 때 대개의 경우 사적인 영역만이 남게 됨.
- **행동, 생각 모두 전정치적인 사적 영역 (private sphere)에 가두어지기에 진정한 행위의 자유란 있을 수 없고**
- 공적인 영역(public sphere)에서 가능한 '평등'이 없이 '차이'만 부각되기에 동등한 권리와 공존이란 불가능한 일이 됨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공적영역으로의 진입

- 공적영역에 편입된다는 것, 곧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 이런 '차이'가 '다원성'으로서 평등화 (equalizing) 되는 공간에서 행위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치적 평등과 자유를 갖는다는 의미인 것**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

- 참여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참여를 거부하는 일은 "자신의 견해를 의미 있는 견해로, 행위를 효과적인 행위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참여의 의미

- **참여는 상실된 언어에 타당성을 부여하며**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인간은 언어와 사유의 권력을 지배하는 존재로 정의되었음) **상실된 인간 관계의 회복**(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인간은 정치적 동물, 즉 어떤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존재로 생각되었다)을 가져옴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참여의 의미

- 지구화 시대 참여의 의미는 권리를 잃음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잃음으로써 점점 권리를 잃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의 존재로서 자격을 잃고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이게 만드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스스로 참여한다는 것

- 피해당사자가 스스로 정치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스스로 보이는 존재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
-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지 않겠다고 세상에 알리는 일
- 더 나아가 세상에서 존중 받는 존재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지구화 시대의 참여 김만권

헌법 속 민주시민, 교육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헌법 속 민주시민, 교육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입법학센터장
심우민 (법학박사)
legislation21@ginue.ac.kr
<http://www.legislation21.org>

1. 헌법적 전제로서의 자유주의 법질서

1. 헌법적 전제로서의 자유주의 법질서

자유주의 법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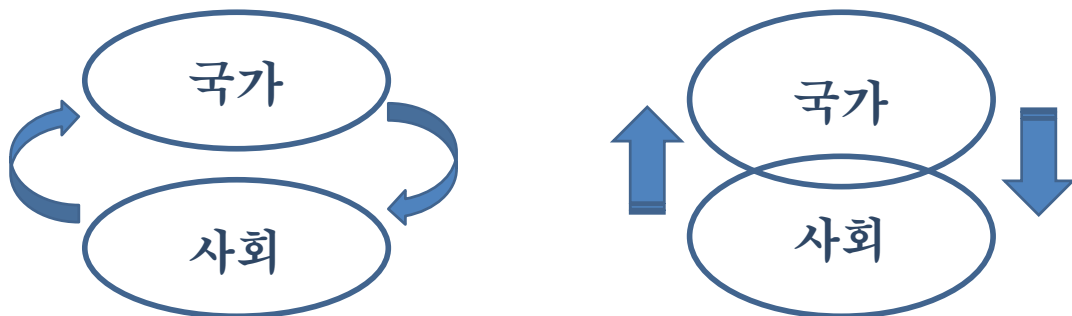
- ▶ 한국의 법체계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자유주의적인 법 이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회 이원론에 토대를 두고 있음
- ▶ 국가-사회 이원론은 관념적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를 구분하고, 국가는 사회 영역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되며, 개입하는 경우에도 매우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 국가가 사회 영역에 매우 제한적으로 개입한다는 지점에 있어 법(률)은 그 개입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천명되어 있음(헌법상 자유주의 이념 반영)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 헌법적 전제로서의 자유주의 법질서

국가-사회 이원론(이해유형)



- ▶ 결국 자유주의 법질서 이념에 근거할 때, 법(률)이라는 것은 함부로 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곧 국가의 사회에 대한 간섭과 개입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임

1. 헌법적 전제로서의 자유주의 법질서

근대 사회 법(령)의 성격

- 공공성 (publicity)
 - 사회집단과 분리되어 있는 중앙정부에 의해 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 실정성 (positivity)
 - 형식화된 규범으로서의 법이 제정되는 것을 의미함
- 자율성 (autonomy)
 - 실체적(경제, 정치, 종교), 제도적(사법부), 방법론적(법해석 방법) 그리고 직업적(전문직역) 자율성(독자성)을 가짐을 의미함(cf. 정치와 법의 관계)
- 일반성 (generality)
 - 입법의 일반성과 법적용의 통일성의 이념(법 앞의 평등)

1. 헌법적 전제로서의 자유주의 법질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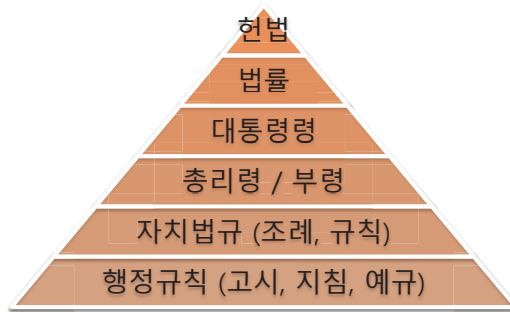
법(령) 체계 이해의 기초(1)

- 자유주의 이념에 터 잡고 있는 한국의 법체계는 여타의 다른 서구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최고규범으로 하여, 헌법의 이념을 현실화하는 법률, 그리고 그 하위의 법령들로 구성되어 있음
- 전통적으로 법 영역은 그 이해관계자들의 관여 방식에 따라 공법관계(국가-국민 관계), 사법관계(국민-국민 관계)로 구분되고 있음
 - 공법 관계 법률 예시: 헌법, 행정법, 형법 등
 - 사법 관계 법률 예시: 민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 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한 위와 같은 법체계 분류는 국가 공동체의 발전에 따라, 사회법이라는 새로운 법영역을 창출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회 자율에 모든 것을 일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 사회법 관계 법률 예시: 노동법(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경제법(독점금지법 등) 등

1. 헌법적 전제로서의 자유주의 법질서

법(령) 체계 이해의 기초(2)

- 법률 이하의 하위법령들은 법률의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거나, 자체적인 행정사무에 관한 행정부 내부 규율을 목적으로 제정됨 (cf. 법규명령, 행정규칙)
 -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은 규정하는 하위법령은 기본적으로 법률상 위임의 범위를 일탈할 수 없음(법률유보, 의회유보의 원칙)



2. 대한민국 헌법

2. 대한민국 헌법

헌법이란 무엇인가

➤ 헌법

-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의 최고 법규범

➤ 기본권 보장

- 헌법은 국민이 갖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기본권)를 열거하고,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떠한 방법과 요건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를 규정함(cf. 헌법 제37조)

➤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권력분립)

- 헌법은 전통적으로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근대국가 헌법은 자유주의 국가이념에 입각하여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권력분립(견제와 균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

2. 대한민국 헌법

헌법원리(1)

➤ 민주주의 원리

- 민주주의원리란 국가권력의 창설과 행사의 최종적 정당성 근거가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는 원리
- 헌법은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대의제, 직접민주제, 선거제도, 정당제도 등을 헌법상 제도로써 채택하고 있음

➤ 법치국가 원리

- 법치국가원리란 국가와 국가기관의 활동, 국가공동체에서 생활하는 국민 생활의 기준과 방식을 법이라는 형식에 의해 제공해야 한다는 원리
- 헌법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을 헌법상 제도로 채택하고 있음

❖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국가 원리 길항관계

2. 대한민국 헌법

헌법원리(2)

▶ 복지국가원리

- 복지국가원리란 시민에게 근대의 형식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원리
- 헌법상 복지국가원리는 이념과 중간목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채택(규정)되어 있는 제도는 상대적으로 빈약한데, 그 이유는 그 구체적인 실현이 입법자의 권한에 맡겨져 있기 때문임(프로그램적 권리)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법치국가적 헌법 이념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그 자체로 특별한 내용을 가진다고 이해하기보다는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복지국가원리 등이 구현되는 가치질서를 의미함

❖ 자유주의 → 복지국가 → 신자유주의

2. 대한민국 헌법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2. 대한민국 헌법

헌법상 열거된 기본권(1)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대한민국 헌법

헌법상 열거된 기본권(2)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헌법

헌법상 열거된 기본권(3)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한민국 헌법

헌법상 열거된 기본권(4)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2. 대한민국 헌법

헌법상 열거된 기본권(5)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전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의 보장/제한, 그리고 의무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참고: 기본권의 종류 구분

- 자유권적 기본권
- 참정권적 기본권
- 청구권적 기본권
- 사회권적 기본권
- 평등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 헌법 그리고 국민주시민교육

3. 헌법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사진 또는 계기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3. 헌법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시민의 개념

- ▶ 시민은 민주적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력의 창출 및 감시의 주체로서 기능하는 자들을 의미함
- ▶ 시민은 그 역할과 결부하여 정치 공동체적 측면에서 정치적 · 도덕적 · 법적 권리와 의무가 부여됨
- ▶ 일반적으로 시민은 국가 및 정치 공동체 차원의 의사결정에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상정하고 있음
- ▶ 비관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 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됨
- ▶ “국민” 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법적 지위의 일종으로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가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3. 헌법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시민성의 개념

- 시민성(citizenship)은 통상적으로 정치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품성 또는 내용으로 이해됨
- 시민성의 개념은 인간성의 개념과 구분되는데, 인간성은 보편적으로 인간이라면 갖추어야 할 자질 및 역량을 의미하지만, 시민성은 그러한 시민이 터 잡고 있는 정치 공동체나 시민사회의 맥락을 떠나서는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구성적 개념으로, 각각의 사회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가지게 됨

민주시민의 역량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교육부, 2018)

-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핵심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
- ✓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
- ✓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 ✓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 ✓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 ✓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

3. 헌법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전환의 시대

- 새로운 민주주의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과거 질서 및 패러다임의 현격한 변화를 불러옴
- 전면적인 사회 혁신에 적응할 수 있는 비판적 판단 및 실천 역량이 요구되는 상황임
- “헌법 해석에 관한 주권자 의지”와 “시민적 구성”

제도적 상상력(institutional imagination)의 필요성

- 기존의 틀과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상상력 필요
- 기존 제도와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이상향을 설정 및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상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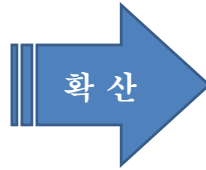
민주시민 역량을 길러낼 수 있는 교육

- 정규 교육과정의 의미를 시민교육적 차원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 시민교육’을 ‘학교 시민교육’을 보완하거나 확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시민교육 가치의 지속성 확보

3. 헌법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적 확산

- 정치교육
- (헌)법교육
- 인권 시민교육
- 소비자 시민교육
- 다문화 시민교육
- 미디어 시민교육
- 환경 시민교육
- 세계 시민교육



법교과 영역
(과학, 체육, 컴퓨터,
음악, 미술 등)
+
기타 사회 실천 연계



마을공동체의 밑거름으로 피어나는 민주시민 꽃!

이정미(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공동대표)

1. 들어가며

“지금 마을은 준비 없이 만난 ‘주민자치’ 앓이 중”

수도권 중심 발전에서 지방균형발전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자치분권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천시 역시 신도심과 구도심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원도심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군·구의 주민 및 공동체가 주도하는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10여 년 마을공동체 활동을 한 활동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지원>이란 주민자치회 전환 및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예산과 교육지원이 아닌 주민(住民)이 주민(主民)되어 민주시민으로 마을에 문제점을 같이 공감하고 그 해결점을 찾아가는 주민자치회가 준비되기 위해 기다려주며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수년간 마을계획단을 운영하며 마을계획 수립이라는 과정을 통해 참여와 책임, 합리적 의사결정, 다양성 존중, 숙의, 공론화, 공공성 등 다양한 주민자치문화를 경험하고 학습했기에 주민자치회의 전환과 함께 참여예산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다. 인천은 2013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역 센터가 개소하였고 7년 동안 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마을공동체 활동이 마을에 알려지기 시작한 걸음마 단계이다. 주민참여예산 활동 역시 2013년부터 시작됐지만 마을 의제 발굴 및 주민총회를 진행하며 성숙한 참여예산위원회를 꾸렸던 동은 각 구에서 몇 개 동에 불과하다.

2021년 미추홀구, 연수구, 서구가 전 동 주민자치회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6시간의 기본교육이면 누구나 다 주민자치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은 달라지는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전환 후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것은 더더욱이 어렵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름만 변한 제도가 아닌 주민이 주인으로 마을 문제를 같이, 함께 풀어가고 그 과정을 통해 올바른 가치를 실천하는 책임감까지 배우는 과정으로 진행되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준비 없이 주민자치회와 마주하는 주민들은 ‘주민자치’ 앓이를 하고 있기에 이번 시간에는 마을 현장의 활동을 분석해보고 마을에 필요한 민주시민의 성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II. '가치'로 풀어보는 마을 현장

마을의 다양한 활동을 '가치' 기준으로 바라보기.

참여

어떤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여 관계함.

마을 활동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의 관심과 참여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다. 그만큼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참여기회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공공성	참여	협력	공감
지속성	관심	소통	신뢰
다양성	배려	존중	균형
개방성	변화	합리적	경청
주인의식	약속	관계	평등

<사례1> 마을에 대표적인 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 참여 방법 : 신청서 접수 후 면접 심사
- 신청서 작성내용 : 개인의 학력은 물론 배우자의 학력
본적, 하는 일, 가족관계
- 면접심사위원 : 동장, 팀장, 주민자치위원장
- 위촉 : 행정 동장
-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

마을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치력을 강화하며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개발하여 마을 평생학습 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 배움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분과를 구성하여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

즉 마을에 관심이 많고 마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위원회이다. 하지만 많은 수의 위원은 오랫동안 그 동네

에서 활동했던 단체 리더이거나 사업가, 마을에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 관변단체의 임원이다. 보통 10여 년 이상 활동한 위원이 많다 보니 친목 모임처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마을 축제, 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마을을 위해 활동한 것은 많다. 하지만 우리는 민주시민 활동 차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 참여의 문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나?
- 활동 내용은 주민에게 공개되었나?
- 마을 주민 누구나 주민자치위원회에 제안 및 건의를 할 수 있었나?

바로 참여를 위한 '개방성'에서 우리는 멈춰 서게 된다. 이런 점을 개선하고자 2011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는 6시간의 기본교육을 이수하면 주민 누구나 공개 추첨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구(區)단위 조례제정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기본교육

을 이수하면 공개 추천 없이 주민자치회로 승계되는 조항을 넣어 진행하는 구(區)가 있다.

<사례2> 가좌동 초록장터

- 참여자 :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진행하고 싶은 단체 모두 가능
- 운영원칙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활동을 공유, 스스로 운영하고, 책임진다.
이익금의 10%는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것이 원칙
- 운영 : 참여단체 모두 주최이고 주관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를 진행함.

이런 점에서 2008년부터 24회 운영했지만, 행사성, 상업성과는 거리가 멀고 학교, 기관, 단체, 주민공동체가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었다.



민주시민은

참여를 통해 마을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과 함께 협력하고 배려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한 민주 시민, 건강한 마을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다.
그렇기에 마을 활동에서 ‘참여’는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이다.

평등 차별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 마을 주민 누구나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

마을 활동을 하면서 종종 듣는 대화다.

“그래도 위원장은 남자가 해야지”

“나이도 어린데 잘 할 수 있겠어?”

“우리 동네에 몇 년 살았어요? 난 30년 살았는데”

“사업대상지에 거주하세요? 세입자세요?”

“한국말도 잘하지 못하는데 뭘 알겠어요”

- 마을 활동을 하는데 남/여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
- 다양한 의제 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며 서로 다른 시각으로

마을을 바라보며 창의적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창의성이 마을 경쟁력이다.

- 마을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데 마을 거주기간은 기준이 될 수 없다.
- 도시재생사업으로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은 대상지 내의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마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그렇기에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공공영역의 계획에서는 열린 참여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이제 다문화가족은 우리의 이웃이다. 조금 더 섬세한 배려와 소통으로 함께 하여야 한다.

언어, 인종, 신체적 차이, 외모 등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봐야 한다.

특히 마을 활동에서 의제 대상자의 의견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어린이가 안전한 마을을 어른이 디자인한다면 최소한 학교와 함께 협력하여 어린이가 생각하는 안전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마을 활동에서 불평등하다는 것은

기회, 공정, 존중, 균형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주민의 신뢰를 받고 소통하는 공동체도 될 수 없을 것이다.

마을마다 처한 조건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서로 다르기에 어떤 방법이 맞는 방법이라 정하는 것보다 보편적인 지식, 가치, 태도로 우리 마을공동체가 당면한 중요한 문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며 합리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Ⅲ. 마을활동력과 민주시민

“자기 결정성이 있는 주민이 많을수록 마을활동력은 높아진다.”

마을은 하나!
역할은 달라도 목표는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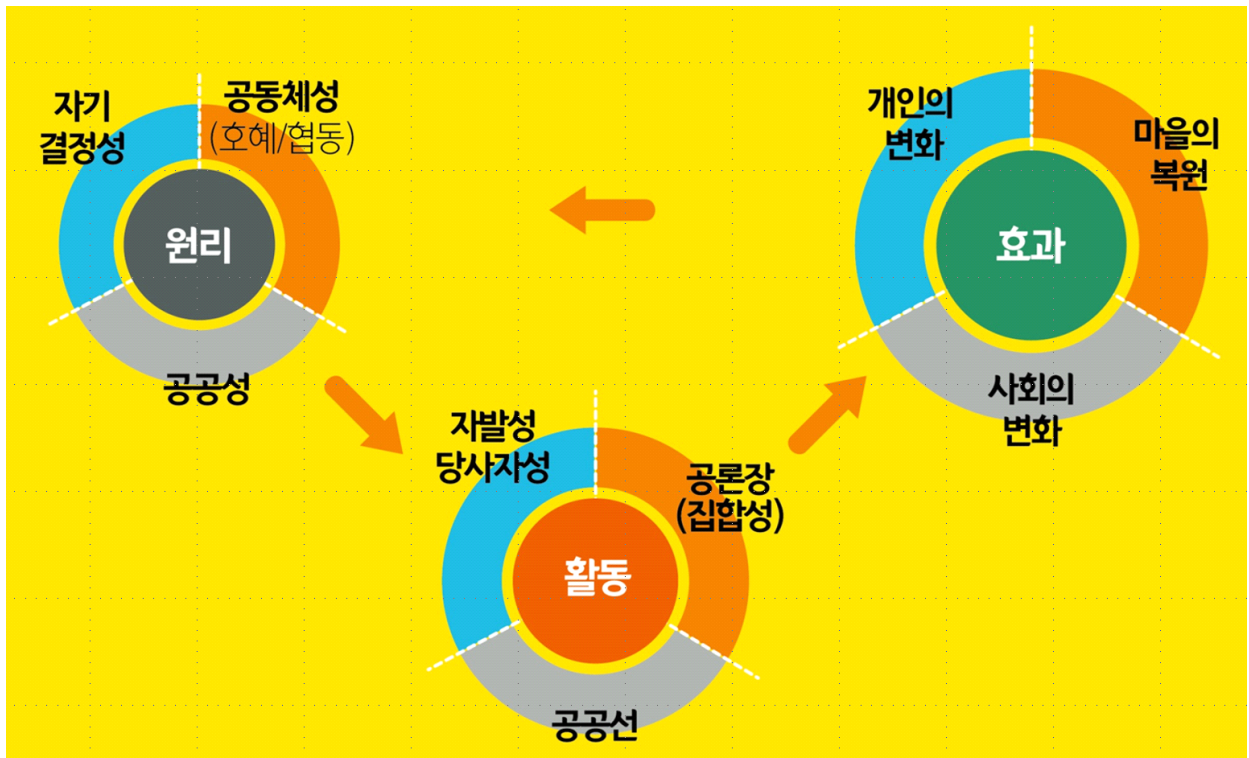


마을에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는 3곳이 있다.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참여예산위원회’, 복지공동체를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마을 자치와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이다. 이렇게 3곳의 위원회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모두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

변 같은 사람이 활동한다면 그 마을의 활동력은 유지될 수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같고 참여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주민이 적다는 말과 같다.



출처 :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활동가 교육 교재

마을활동력은 주민이 스스로 마을 문제해결을 위해 목적을 갖고 움직일 때 높아지며 이런 활동이 많아지면 마을에는 공동체가 회복된다.

또한 자발적 활동을 통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연대하는 관계를 맺는 주체가 된다. 서로서로 인식하게 되고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단계가 된다면 마을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활동력을 높이는 방법

1.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서로 잘 알아가는 꺼리 만들기'
2. 주민공동체 활성화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받는 것'에서부터
3. 주민공동체 성장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보람을 찾는 것'에서부터
4. 건강한 주민공동체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Ⅳ. 풀뿌리민주주의 힘, 민주시민

시민은 공동체의 주체이고, 다양한 주체들의 함께 사랑가는 방식을 민주주의라고 할 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공통성 또는 합의는 공동체를 존재하고 유지하게 하는 근거이다. 우리 마을공동체의 공통성이 많을수록 그만큼 서로가 포용할 수 있는 다양성의 범위도 커

진다.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의 공통성 또는 합의는 어떻게 커질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바로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소소하게라도 함께 하는 일이 잦고 마을 속에 나의 의견, 나의 활동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견, 우리의 활동이 되어 공동체의 공통성이 커가는 것이다.

풀뿌리민주주의의 힘은 민주시민에게서 나오고 민주시민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의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

마을 안에는 다양함이 있기에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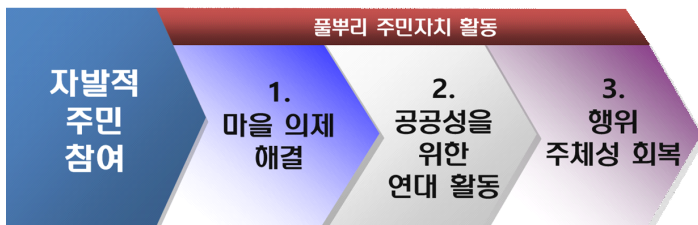
갈등을 인지하고 해결하는 과정도 주민의 성장하는 과정이다.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민주시민으로 주민자치에 참여하고 공동체 영향력을 키워가는 과정은 풀뿌리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 마을공동체 관점의 풀뿌리 주민자치의 정의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집단적 역량을 키워 스스로 마을 의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 정부의 공식적 의사 결정 과정과 서비스 생산과정에 관여하면서 정부에 대한 공동체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과 활동’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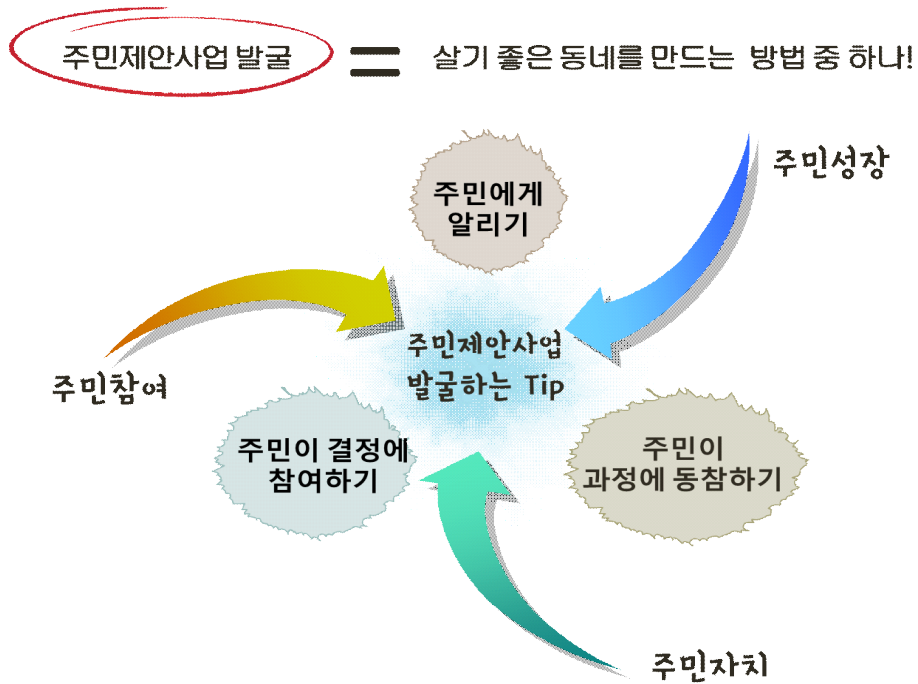
(출처 : 박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2019 서울시 정책웹진 <서울마을> 제4호)



하지만 지금처럼 급하고 준비되지 못한 환경에서 여전히 불평등하고 폐쇄적이며 주민자치회의 성장 없이 행정 도움에 의존하고 소극적이라면 마을 자치, 지방자치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마을 통합적 플랫폼이라면 그 안에서 나온 의제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참여예산 제도이다. 마을 의제를 찾고 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두 제도가 유사하여서 마을에 따라 중심을 두고 있는 제도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두 제도 모두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가 목적이라는 점은 같다.

● 풀뿌리민주주의 관점에서 제안하는 참여예산 활동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었으니 무조건 지역참여예산 위원회 활동은 무의미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마을 활동의 활성화가 참여예산 활동이 더 좋다면 참여예산 분과를 그대로 두어서 조직화된 공동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주민자치회 활동이 더 활발하거나 두 위원회 활동이 비슷하다면 주민자치회에 참여예산의 기능과 역할을 통합시켜 새롭게 운영규칙을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풀뿌리민주주의와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를 통해 시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참여했던 주민의 활동도 존중하며 이어갈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주민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참여기회가 부여될 때 마을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활동력 있는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성을 높여 마을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보이텔스바흐합의와 민주시민교육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민주시민교육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조교수
입법학센터장
심우민 (법학박사)
legislation21@ginue.ac.kr
<http://www.legislation21.org>

1. 시민교육

1.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2018.11)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 민주시민의 역량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핵심가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
- 타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다원성을 인정하는 시민적 관용
- 공공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시민적 효능감
- 사회·정치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비판적 사고력
-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
-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와 상생의 원칙에 따른 협력과 연대

1.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안번호: 2100054) (1)

▶ 개념 정의(안 제2조 제1호)

“민주시민교육”이란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 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제3조)

-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 정당 또는 정치적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조직 및 활동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민주시민교육은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생 동안 장려되어야 한다.

1.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안번호: 2100054) (2)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안 제4조)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가치·역사 및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이해
-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정치참여 및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 민주적 토론방식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훈련
-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모든 교육

1. 시민교육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안번호: 2102063) (1)

▶ 개념 정의(안 제2조 제1호)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며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등 민주시민의식을 높여 공동체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안 제5조)

-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다루어야 하며, 주입이나 교화는 금지한다.
-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1. 시민교육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의안번호: 2102063) (2)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안 제5조)

-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제도
-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 「대한민국헌법」의 내용과 가치
- 민주적인 생활원리
- 의회, 정부, 법원,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 공공재정의 기능 및 운영원리
-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실천
-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내용

1.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정책 담론에 관한 의문

▶ 학교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성?

사회과는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등의 교과 역량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창의적 사고력은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비판적 사고력은 사태를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은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 활용 능력은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해석, 활용,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사회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3면〉

▶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에 교육이 기여한 부분은 없는가?

- K-Democracy?
- 학교 교육이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분명히 우리나라의 민주화 역사에 기여한 부분은 존재
- 교육 내용의 문제인가? 방법의 문제인가? 아니면 한국 입시제도의 문제인가?

2. 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2. 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구성(형성)되어지는 시민성

- 개괄적으로 시민이 갖추어야 할 자질 및 역량을 의미하는 시민성은 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시민의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서 당연히 갖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주체의 노력을 통해서 형성 및 구성되어지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시민성은 시민교육에 의해 함양될 필요가 있음

시민교육의 의미

- 시민교육(civic education, citizenship education)은 크게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협의의 시민교육: 시민이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정치현상과 기능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치 과정에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 기능, 가치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토록 하는 것(국가와의 관계성 중시)
 - 광의의 시민교육: 시민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각 활동공간인 직장, 지역사회, 국가, 국제 사회의 각 기능영역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생태 등의 분야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질을 체계적으로 함양토록 하는 것
 - 역사적·맥락적으로 보자면, 시민교육의 관점은 협의의 시민교육에서 광의의 시민교육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임
- ※ 참고: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교육은 사실상 동의어로 활용되고 있음

2. 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교육의 이념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설정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교육부, 2018)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

2. 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시민교육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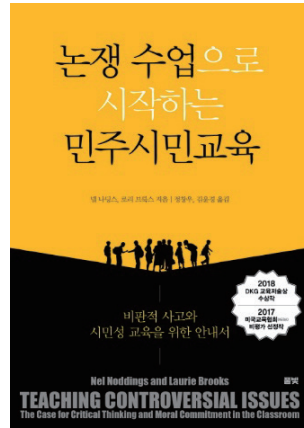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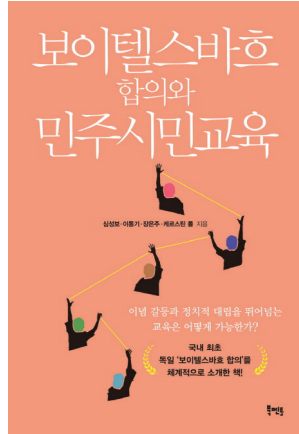
민주시민교육의 예시적 구성요소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교육부, 2018)/영국 크릭보고서(1997) 발췌

- ✓ (주요 내용)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협력과 갈등, 평등과 다양성, 공정, 정의, 법의 지배, 인권, 자유와 질서, 개인과 사회, 권리와 책임 등
- ✓ (가치와 태도)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신념, 분쟁해결 의지, 협력과 나눔의 정신, 관용, 도덕적 기준에 따른 판단과 행동, 인권·양성평등·환경 등에 대한 관심, 예의와 법 존중, 자원봉사 등
- ✓ (기술과 능력) 논리적 주장을 펼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생각과 경험을 경청하고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의견에 대한 관용 등
- ✓ (지식과 이해) 민주 사회의 성격·기능·변천, 다양성·불일치·사회적 갈등의 양태, 개인과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도덕적·정치적 문제, 정치체도와 법, 경제, 인권현장, 지속가능개발과 환경문제 등

구체화와 합의(컨센서스) 담론의 필요성

- ▶ 과거 시민교육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민주시민교육은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국민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성을 키우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시민교육의 목표와 기본원칙 등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와 합의과정 선행 필요

2. 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2. 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시민교육의 원칙 - 보이텔스바흐 합의(독, 1976)을 예시로

- ▶ 억압금지 원칙: 특정한 가치와 내용을 강요함으로써, 학습자의 자립적인 판단 능력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 논쟁성 재현의 원칙: 사회적으로 타름이 있는 쟁점들은 교실 현장에서도 논쟁적으로 재현되도록 함
- ▶ 학습자 이해관계 인지의 원칙: 학생들이 현실 정치 상황과 자신의 이익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함

우리의 경우는?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학습자)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증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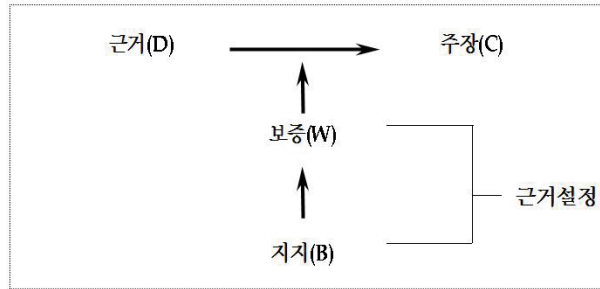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논쟁성 재현의 중요성

- 무한퇴행 / 뮌히하우젠트릴레마
 - 롤즈(Rawls): 원초적 입장 / 하버마스(Harbermas): 이상적 담화상황
 - cf. 정치학은 불일치를 활성화하고, 법학은 불일치를 축소한다는 견해가 있었음



사법판단? 對 입법판단?

2. 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정치적 환경(Jeremy Waldron)

- 사람들은 정책, 정의, 원리, 그리고 권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성실히 토의한 뒤에도 불일치를 보일 수 있다.
 - 누군가가 자신의 주장이 옳은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그들의 또 다른 주장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과 경합하게 된다. 더욱이 우리는 누구의 의견이 정당한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누군가의 견해가 설사 객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견해가 옳은지에 대한 사람들의 '신념' 일 뿐이다.
-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집단적인 결정과 행위 과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해결책이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 및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야지만 정치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게 된다(진리의 문제 X / 믿음의 문제 O)

2. 시민교육과 보이텔스바흐 합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성격

- 정치 또는 시민교육을 기본적으로 가치간 대립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 방식과 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명시적인 합의를 당초 거두었던 것은 아님
- 보이텔스바흐 지역에서의 논의를 정치교육적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간 결과, 그것이 정치 및 시민교육상 하나의 원리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런 의미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시민성과 그것의 기반인 시민교육이 ‘구성되어지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한국적 전용

-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한국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표현은 달리하더라도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충분히 활용될 만한 가치를 가짐
- ‘억압금지 원칙’, ‘논쟁성 제한 원칙’, ‘학습자 이해관계 인지 원칙’은 단순한 교육자의 중립성을 형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자는 <교육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인식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 가치적 한계 사례를 논제로 한 교육에 있어서는 억압금지나 논쟁성 제한 과정에서 또 다른 딜레마를 연출한다는 한계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ex. 젠더인권, 다문화인권 등)

3. 선거공용과 입법공용의 대비

3. 선거교육과 입법교육의 대비

주권자로서의 국민

▶ (국민)주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로 이해되고(헌재 2000. 3. 30. 99헌바113, 판례집 12-1, 359, 368-369, 헌재 2006. 2. 23. 2003헌바84, 판례집 18-1상, 110-127 등 참조), 선거운동의 자유의 근거인 선거제도나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상의 제도나 원칙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헌재 2004. 8. 26. 2004헌바14, 판례집 16-2상, 306-323 ; 헌재 2004. 3. 25. 2001헌마710, 판례집 16-1, 422-440 참조).

< 2007헌마843, 2009. 3. 26.>

3. 선거교육과 입법교육의 대비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권 행사

▶ (강학상) 선거권

-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선거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적 기능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참여가 가능한 한 최대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형식적 의미로 보자면, 본질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고, 이러한 대표자의 선출은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대표자에게 부여한다는 의미를 가짐

▶ 선거권 행사의 현실

- 현행 선거제도는 주권자 또는 유권자인 국민으로서 후보자들의 공약 등을 검토 및 점검하여 본인이 원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기본적인 이념형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합리적 선거권 행사 또는 정책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선거권과 선거권 행사의 의미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발생함

3. 선거교육과 입법교육의 대비

대의민주주의는 필연적인가?

- (강학상) 대의민주주의의 논거(허영, 2004)
 - 국민의 자주성과 자결능력에 대한 회의
 - 통치 공간의 광역성
 - 대의제도의 필연성(불가피성?)

- 허구적 필연성(Roberto Unger, 1987)
 - 우리 헌법이 수용하고 있는 자유주의 이념은 국가-사회이원론을 근간으로 이들을 연계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당연한 제도적 전제로 파악하거나, 이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음
 - 현실적으로 개별 주권자(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존재한다면, 실상 대의민주주의가 역사적·제도적으로 선호될 이유는 없음
 - 따라서 현실적인 불가피성이 필연성으로 대두된 결과,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상상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물신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2016년 촛불집회 등은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질서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줌(헌법적 측면에서 대의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

3. 선거교육과 입법교육의 대비

선거는 민주적인가?(cf. Bernard Manin, 1995)

- 후보자의 대표성 문제
 -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피선거권이 누구에게나 인정되지만, 결국 출마하는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주권자는 결국 자신이 출마하지 않는 이상 제시된 후보를 수동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음

- 판단 및 평가 대상으로서 공약의 현실성과 타당성 문제
 -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나름의 고민을 통해 공약을 제시하지만,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분석보다는 득표를 위한 직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경우가 많으며, 결국 주권자는 매번 차악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음(cf. 매니페스토운동)

-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한 판단 지향성 문제(cf. 주권 및 주권자 관념의 이론적 변화)
 - 정책선거의 필요성을 전제로 주권자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결국 이는 주권자의 소극성을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산출해 냄

※ 선거제도로 인해 본인의 정치적 의지와 내용이 사라지고, 그 결과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비판적 판단 능력 및 역량 감소

3. 선거교육과 입법교육의 대비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시민교육

▶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 필요성

- 초중등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민교육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
- 기본적으로는 사회과 및 윤리교육과 연관성을 가지겠지만, 다양한 교과교육 영역과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일반 시민대상(학교밖)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국가가 선도할 경우 21세기 계몽운동으로 변질 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및 그 내용을 전제로 접목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필요함 있음(교육과정 내용에 부합하는 예시적 교육자료 및 내용 제공 등)

※ 예를 들어, 법교육지원법의 경우에는 이러한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며, 경제교육, 인성교육 등 포괄적인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법제들도 유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이벤트형 교육방식의 탈피와 정치 참여 경험의 필요성

- 선거교육이라는 목적 하에 그것이 광의적이든 세속적이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모의선거 또는 모의투표를 경험토록 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적 목적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판단됨(물론 학급선거 등의 경험도 중요함)
- 예를 들어, 청소년의회 및 어린이국회 등의 이벤트가 실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실제 자신의 주장이 정치적 담론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경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cf. 형식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 추구)

3. 선거교육과 입법교육의 대비

입법교육을 통한 주권자 교육

▶ 입법 및 정책 형성 교육(입법교육)

- 선거과정에서 어떤 공약이 현실성과 타당성을 가지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입법과 정책을 형성하는 경험을 해보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경험(실패하더라도)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함
- 이를 통해 피교육자 스스로도 입법과 정책을 만드는 정치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위임했을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더욱 중요함
- 입법과 정책을 형성해보고 그것에 관한 현실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국가 및 공동체 수준에서의 정치가 가지는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입법교육의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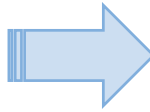
- 국가 및 공동체 수준의 입법 및 정책 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지식에 관한 교육
- 입법·정책 형성 사고과정을 이해하고, 활발한 토의·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교사 전문성(cf. 입법논증; 심우민, 2014)
- 학생들의 입법 및 정책 대안들을 현실화하는 데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중요함(형식적인 법지식 교육은 지양 /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은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해 주는 기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학생들의 대안을 실제 수용 및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적 대안 고민이 필요(cf. 시민의회)

3. 선거교육과 입법교육의 대비

입법교육 모델 프로그램 실험 - 인천광역시교육청 & 경인교육대학교 협력

나도 주권자 : 입법은 우리 손으로
(고등학교 1, 2학년 대상)

1. (이론) 주권자와 입법 참여
(1) 나도 주권자 - 법(규범)의 형성과정에서의 주권자(시민) 참여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한다.
(2) 법을 만든 곳 - 법형성에 있어서의 국회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한다.
(3) 법의 구조와 우리 동네 법 - 헌법, 법률, 하위법령 및 조례의 상호관계, 그리고 조례의 입법과정을 개관한다.
2. (이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조례(입법)
(1) 좋은 입법 알기 - 좋은 입법은 어떤 입법인지에 대한 관점을 정립한다.
(2) 우리지역의 좋은 조례 찾기 - 우리지역의 조례 찾는 방법을 이해한다.
(3) 내가 생각하는 "좋은 조례" vs. "나쁜 조례"(토의-토론) - 좋은 조례 또는 나쁜 조례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상호 논거 제시 및 토론한다.



3. (실습) 조례를 만드는 방법
(1) 입법 원칙 - 법령 및 조례의 입법원칙 체크리스트를 이해한다.
(2) 조례 입법을 위한 문제 사안의 선정(모듬별) - 모듬별 토의를 거쳐 조례 입법을 위한 문제 사안을 선정한다.
(3)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입법 대안 만들기 - 입법원칙 체크리스트에 기반한 모듬별 토의토론을 통해 입법대안을 마련한다.
4. (실습) 토론 및 입안의 실제
(1) 모듬별 입법대안의 발표 및 상호 토론 - 모듬별로 마련한 입법대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상호 토론한다.
(2) 조례 대안의 초안 작성 - 모듬별로 마련한 입법대안을 바탕으로 실제 조례를 성안해 본다.
(3) 상호 평가에 기반한 입법대안의 수정 → 퍼실리테이터 연계(1주간 온라인 소통) - 상호 토론과정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입법대안을 수정한다.
5. (실습) 역량 있는 주권자들의 입법
(1) 전문가 및 멘토 수정의견 반영(실무적 측면) - 전문가 및 멘토의 도움을 바탕으로 조례 문구를 수정한다.
(2) 최종 조례 입법대안의 발표 및 평가 - 모듬별 조례 대안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3) 수료식 (실제 입법 연계 가능성 타진) - 교육과정 수료식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기획

권복희(민주시민교육프로젝트결 대표)

민주시민교육 기획하기- 상상하기¹⁾

“혼자 꾸는 꿈은 단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꾸는 꿈. 지금 우리가 밭 딛고 서 있는 이 땅, 관통하고 있는 이 시대가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꿈. 그 꿈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우리들. 민주시민교육기획자(활동가)입니다.

민주시민교육 기획자로서 꿈꾸기는 세상을 읽어내는 힘을 길러 좋은 민주시민교육을 길러 내는 것, 사회의 변화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성 함양을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로 정하는 것, 교육활동가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활동에 대한 가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에 대한 관점, 시민교육에 대한 일가견, 시민교육활동가로서 자신의 역할에 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민주시민교육기획자로서의 시작점입니다.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인간행동의 계획적 변화를 위한 활동’ 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은 의도성과 계획성을 가지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교육철학이나 가치가 목적의식에 해당합니다. 비계획적인 자발적 학습도 목적의식을 가지긴 하나 교육은 외부에서 영향을 끼치는 목적의식이라는 점에서 학습과 구별됩니다. 때때로 교육은 지나친 목적의식적 통제로 인해 교육대상자의 잠재력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두 되는 것이 지원과 촉진입니다. 교육기획을 함에 있어 일정하고 명확한 목적성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지원과 촉진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꿈꾸기에서 본격적으로 상상하기로 들어가 볼까요?

1) 이 원고는 본 단체가 연구한 ‘2019년 경기도민주시민교육커리큘럼’연구의 실무 매뉴얼 원고 중 기획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한 늙은 체로키 인디언이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는 아이에게 말했다.

“지금 내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두 늙대 사이에 일어나는 끔찍한 싸움이다. 한 늙대는 악한 늙대이다. 그 늙대는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 연민, 죄책감, 적개심, 열등감, 거짓말, 잘못된 자부심, 우월감, 이기심이다. 다른 늙대는 선한 늙대이다. 그 늙대는 즐거움, 평화, 사랑, 희망, 고요, 겸손, 친절, 선행, 동정심, 관대함, 진실, 자비심, 믿음이다. 이것과 똑같은 싸움이 네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손자는 그것에 대해 한참 동안 생각한 뒤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어떤 늙대가 싸움에서 이기죠?”

늙은 체로키 인디언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지.”

체로키 인디언 전설

기획하기는 꿈꾸기 단계에서 형성된 세상에 대한 관점과 시민교육활동가로서 자신의 역할에 관한 인식에 터 잡아 본격적으로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민주시민교육 기획과정에 있어 꼭 놓치지 않고 점검하고 가야 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기
- ② 연구와 조사 그리고 구상하기
- ③ 구체적인 방향 그려보기

1.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기

‘왜 민주시민교육을 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은 기획자로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세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으로 기획할 교육과정에 대한 방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방향에 대한 고민이 없는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실천까지 연결하지 쉽지 않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기획자로서 철학을 세우는 과정에 참고가 될 질문들을 공유합니다. 탐독을 권합니다.

<시민교육 철학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

항목	내용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시민교육기획자로서의 나의 현재 모습은? • 시민교육활동가로서 나는 한국사회에서 어느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구조적인 접근과 사람 중심의 접근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나는 세상이 변화하는 원리를 포착하여 이를 교육프로그램 기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나는 참가자 또는 시민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촉진의 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삶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가?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시민 또는 교육 참가자들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는가? • 또한 그러한 대화가 기획자로서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가?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생각하는 시민교육의 상은 무엇인가 • 나는 강의실을 떠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한 조직가로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 나는 시민교육이 한국사회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 이를 스스로 글로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 나는 모임이나 토론회에서 시민교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가?

2. 연구와 조사 그리고 구상하기

기획단계에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부분은 연구와 조사입니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의 실체는 어떠한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연구와 조사 과정 이후 분석적인 과정에 들어가기 전 자신이 만들어갈 교육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상을 상상해보는 것, 바로 ‘구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도대체 무엇을 구상할 것인가?

<시민교육에 있어서 연구와 구상의 의미>

“우리가 생각하는 시민교육의 철학과 가치를 확신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규모나 실현방법 따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리저리**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

우리는 흔히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질문에 부딪힙니다.

뭐 새로운 거 없을까?
 민주시민교육 하면 너무 막연한데... 뭔가 구체적인 아이디어 없을까?
 이번 주민자치회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기획해볼까?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향한 동기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기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계기라 할 수 있고 이 계기들에 관한 생각을 진전시키다보면 마지막에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의 생각이 바로 컨셉입니다.

☞ 컨셉을 기획하라

- 1) 이리저리 생각한다- 브레인 라이팅
- 2) 기존의 유사한 교육들을 살펴본다-모방은 창조의 어머니
- 3) 생각을 정리한다- 선택과 집중

컨셉이 결정되면 바로 그 컨셉을 현실화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고, 이것이 곧 학습목표설정, 학습내용설계, 프로그램 추진계획수립, 홍보와 모집, 프로그램 진행 등의 과정이 구성됩니다.

☞ 연구와 구상은 어떻게?

연구와 구상은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리저리 생각해보는 것이지요.

- 1) 목적을 명확히 한다.
- 2) 참여자를 찾아라.
- 3)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들려주라(스토리텔링의 중요성)

☞ 좋은 구상을 위한 4단계

- 1) 평상시에 늘 공부하라
- 2) 보고 느끼는 것을 훈련하여 감각을 깨워라
- 3) 스쳐가는 생각을 아이디어 노트에 기록하라
- 4)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작은 것이라도 성공의 기쁨을 가져라

3. 구체적인 방향 그려보기

구체적인 방향 그리기는 3가지 과정으로 소개하겠습니다.

- ① 학습요구 분석
- ② 학습목표 세우기
- ③ 학습내용 설계

3.1. 학습요구 분석

‘학습요구 분석’은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난 후 홍보와 모집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입니다.

학습자가 교육을 통해 바라고 필요한 것, 즉 학습요구와 학습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갖고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육망과 요구에 대한 통찰과 지식이 필요한 지점이며 시민교육이 바라봐야 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 학습요구 조사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직접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조사 과정 참조

단계	영역	내용
1	필요성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의 환경변화를 예의 주시(아젠다와 트렌드) • 내부여건조사 • 요구조사의 필요성을 인식
2	요구조사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계획을 수립- 목적, 결과물, 방법, 일정 등 • 가장 효과적인 도구를 선택/ 개발 • 평소에 생산된 조직 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 정량적, 정성적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자료의 질을 높인다 • 먼저, 느낌조사를 그리고 사실조사를 선별해서 실시한다.
3	자료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조사: 조사범위를 좁혀가며 도구의 타당성을 검토 • 본조사: 자료수집, 분석계획
4	조사결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기법을 통해 조사결과를 분석 • 내외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요구를 추출 • 소정의 기준을 통해 영역별로 분류
5	학습요구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여건, 즉 기관의 가용자원, 주어진 교육시간 교육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확인된 요구를 수립 • 적합성: 교육에 적합한 요구는? • 용이성: 교육으로 접근이 용이한 요구는? • 변화정도: 교육으로 어느 정도 해소/ 충족시킬 수 있는가? • 기여도: 교육으로 해소/ 충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적 해결을 요하는 요구를 선정 • 과정설계 단계로 이행
--	---

욕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참여자 뿐만 아니라 기획자 자신의 욕구도 중요합니다. 시민교육 활동가의 성장이 지속적인 기획활동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획자와 참여자의 욕구가 완벽히 일치할 수 없지만, 차이가 작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지고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이를 좁히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가 좋은 기획을 만들 수 있습니다.

3.2. 학습목표 세우기

‘학습목표 세우기’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어떻게 얼마만큼 변화하기를 바라는지 정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핵심메시지입니다. 바로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 목적과 목표의 차이

- 목적: 시민교육 활동의 근본적인 이유와 방향
평화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평화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배우고 훈련할수 있도록 한다.
- 목표: 시민교육을 통해 얻을 열매(구체적인 성취지점)
평화적 갈등해결을 통해 참가자들이 갈등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 자신감과 관계의 기술을 얻도록 한다.

☞ 핵심메시지

자신이 만들고 실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이 한마디로 무엇인지, 핵심메시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메시지를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목표도 명확해지고, 이로부터 교육 프로그램의 제목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3.3. 학습내용 설계

‘학습내용 설계’는 학습욕구에 기반 해 세워진 학습프로그램을 채울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좋은 내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내용을 충분히 내면화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학습내용을 설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학습내용 설계과정

하나. 학습주제 선정
둘. 선정된 주제들 토대로 학습내용과 형식 구성
셋. 강의의 구성방향 설정

3.3.1. 학습주제 선정

학습주제 선정은 교육프로그램에 담길 주제들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학습주제 선정과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과 유사하게 생각하고 살펴보고 선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획의 과정이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택의 방법은 전 단계에서 도출된 학습주제 아이디어 목록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기획하는 교육프로그램에 할애된 시간에 학습자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양의 학습주제를 선택합니다. 학습주제 선택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습주제선택에 있어 고려사항들

기준	내용
합목적성	교육목표에 반영된 개인적 요구나 사회적 요구 및 철학적 이념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높이	참가자의 선행 학습경험, 능력과 관심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참가자의 자발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효과성	기대하는 학습효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효율성	주어진 교육여건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성, 긴급성	사회적 요구와 과제에 따른 중요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현장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일목적 다경험 일경험 다목적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가지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관련지으며 반대로 한 가지 경험은 몇 가지 목표에 관련지음으로써 동시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적절성	교육기관의 여건, 시설을 고려해야 합니다.

3.3.2. 학습내용과 형식 구성

학습주제가 선택되었다면, 내용과 형식을 구성할 차례입니다.

기획자의 상상력이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기획자가 파악한 학습자의 욕구와 자신의 신념을 토대로 역동적인 형식과 내용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 ‘살아 움직이는’ 학습내용 설계를 위한 방법으로 여기서는 ①스토리 라인 ② 배움과 실천의 연결 ③ 짜임새 등 3가지 중요한 지점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① 스토리 라인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을 생선가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생선머리는 핵심메시지,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교육의 큰 이야기 줄기가 나오는데 생선의 등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학습내용을 풍성하게 만들 소재들은 작은 가시들에, 꼬리는 전체교육을 닫는 마무리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강사들이 강의를 통해 살을 붙여 학습자들을 만나게 되지요.

이것은 이상적인 어떤 모델이고 이를 토대로 기획자의 생각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가해지고 역동성이 부여됩니다.

☞ ② 배움과 실천의 연결

민주시민교육은 단지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교육은 아닙니다. 교육에 참가자는 교육이 끝나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치와 삶의 양식을 실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움과 실천의 연계를 고려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 ③ 내용과 형식의 짜임새

스토리 라인구성과 배움-실천의 연계에 대한 고려를 통해 학습내용의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학습내용들을 적절한 형식과 조합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목표에 따라 학습내용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학습내용과 형식의 조합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말은 바로 짜임새입니다. 다양한 색감의 천을 이어붙이는 것을 보고, 기획의도가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성요소들이 서로 어울리게 배치 되었을 때 우리는 쿨트작품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 누더기라 부릅니다.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이 쿨트가 되느냐 누더기가 되느냐는 기획자의 몫입니다.

3.3.3. 강의안 구성방향 설정

학습내용설계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 강의의 구성방향

- 기획의도: 교육의 철학적 방향과 목표, 지향점 등
- 학습자: 학습욕구와 대략의 학습자들의 상황
- 강의내용: 학습주제를 구현함에 있어서의 가치관, 난이도, 학습 3요소의 배합 등
- 강의 형식: 강의내용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강의형식(방법론 등)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주소 등